

제149차 학교법인국제대학교 이사회 회의록

구 분	이 사	감 사
임원정수	7 인	2 인
재적임원	6 인	2 인
참석임원	6 인	2 인

1. 일 시 : 2018. 12. 18(화) 오후 5시 (회의소집 통보일 : 2018년 12월 10일)

2. 장 소 :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46-15 청원빌딩 4층 회의실

3. 임원 출·결 사항

- 참석 이사 (6인) : 강재상, 박성배, 이혜선, 장병집, 황인하, 황철순
- 참석 감사 (2인) : 임안식, 임재현
- 결석 이사 (0인) : 없음
- 결석 감사 (0인) : 없음

4. 안 건

가. 2018회계연도 법인(일반·수익)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나. 2019회계연도 법인(일반·수익)회계 예산(안)

다. 법인 직원인사규정 제정(안)

라. 교원·직원 징계처분에 관한 규정 개정(안)

마. 교원·직원 징계위원회 위원 선임(안)

바. 2018회계연도 교비(등록금·비등록금)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사. 교원 재임용(안)

아. 기타사항(안)

5. 회의내용

간 사 : 금번 이사회는 사립학교법 제17조 4항 및 법인 정관 제31조에 의거하여, 재적이사 전원이 소집되고 전원이 개최를 요구·동의하여 소집된 이사회임을 설명하고, 재적이사 여섯 분 전원 참석하여 성원이 됨을 보고하다.

간 사 : 현재 김홍경 이사장의 연임 승인이 지연되어, 이사장이 공석으로 되어있는바, 금일 회의진행을 위하여 호선으로 이사장직무대행자를 선출해야함을 설명하다.

(이사들은 의견을 교환하다.)

(호선 결과 박성배 이사가 이사장직무대행자로 선출되다.)

<간서명>	황철순	강재상	장병집
-------	-----	-----	-----

이사장직무대행자 : 개회선언.

< 제1호 안건. 2018회계연도 법인(일반·수익)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

이사장직무대행자 : 제1호 안건인 2018회계연도 법인(일반·수익)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고 안건에 대하여 총무팀장에게 설명요청하다.

총 무 팀 장 : 2018회계연도 법인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별첨]과 같이 수입·지출 총액 723,799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요내용으로 경기도 안성시 소재의 수익용기본재산 매각 금액 448,621천원은 교육부 승인에 따라 추후 수익용 기본재산 구입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익용 예금 예치를 하고, 2015년부터 예수금으로 보관 중이던 자금(2012년 김용진 전 이사장의 재판 중 법인 산하 고등학교 분리와 관련하여 우리법인에 위로금 명목으로 임의 지급한 공탁금)을 수익회계 자본 확충을 위해 자본금으로 전출하고자 하며, 기타 일부 과목의 과부족 조정을 위해 편성하였으며, 수익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별첨]과 같이 일부 과목의 과부족을 조정하여 수입·지출 총액 369,650천원으로 편성·운영 할 것을 설명하다.
(이사들은 회의자료를 검토하고, 의견을 교환하다.)

이사장직무대행자 : 감사에게 검토의견을 요청하다.

임안식 감사 :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의견을 제출하다.
(이사들은 의견을 교환하다.)

강재상 이사 :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제안하다.

황철순 이사 : 제안에 동의하다.

장병집 이사 : 동의에 재청하다.

이 사 일 동 : 전원 찬성하다.

이사장직무대행자 : 제1호 안건 2018회계연도 법인(일반·수익)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별첨]의 2018 회계연도 법인 일반회계 및 수익회계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총괄표와 같이 법인 일반회계 자금예산 수입·지출 총액 723,799천원, 법인 수익회계 자금예산 수입·지출 총액 369,650천원으로 편성·운영 할 것을 만장일치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000

< 제2호 안건. 2019회계연도 법인(일반·수익)회계 예산(안) >

이사장직무대행자 : 제2호 안건인 2019회계연도 법인(일반·수익)회계 예산(안)을 상정하고 안건에 대하여 총무팀장에게 설명요청하다.

총 무 팀 장 : 2019회계연도 법인 일반회계 예산(안)은 [별첨]과 같이 수입·지출 총액 135,700천원으로 하여 주요사항으로 사학연금 법정부담금 전출액은 80,000천원으로 편성하였고, 법인 수익회계 예산(안)은 [별첨]과 같이 수입·지출 총액 230,100천원으로 편

<간서명>	황철순	김용진	장병집
-------	-----	-----	-----

성하였음을 설명하다.

(이사들은 회의자료를 검토하고, 의견을 교환하다.)

이사장직무대행자 : 이사들에게 의견제출 요청하다.

(각 이사들은 회의자료인 예산서를 검토하고, 의견을 교환하다.)

임재현 감사 :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의견을 제출하다.

(이사들은 의견을 교환하다.)

강재상 이사 :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제안하다.

이혜선 이사 : 제안에 동의하다.

황인하 이사 : 동의에 재청하다.

이 사 일 동 : 전원 찬성하다.

이사장직무대행자 : 제2호 안건 2019회계연도 법인(일반·수익)회계 예산(안)은 [별첨]의 2019회계연도 법인(일반·수익)회계 예산(안) 총괄표와 같이 사학연금 법정부담금 전출액으로 80,000천원을 포함하여 법인 일반회계 수입·지출 총액 135,700천원으로 편성하고, 법인 수익회계 수입·지출 총액 230,100천원으로 편성·운영 할 것을 만장일치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000

< 제3호 안건. 법인 직원인사규정 제정(안) >

이사장직무대행자 : 제3호 안건 법인직원인사규정 제정(안)을 상정하고 안건에 대하여 총무팀장에게 설명요청하다.

총 무 팀 장 : 법인 직원인사규정의 제정은 2018년도 교육부 실태조사 처분 결과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라는 시정통보에 이행사항으로 법인 직원인사규정을 제정하는 것임을 설명하다.

(이사들은 법인직원인사규정을 검토하고, 의견을 교환하다.)

황인하 이사 : 실태조사의 이행을 위하여 규정 제정하는 것을 원안대로 의결 할 것을 제안하다.

강재상 이사 : 제안에 동의하다.

황철순 이사 : 동의에 재청하다.

이 사 일 동 : 전원 찬성하다.

이사장직무대행자 : 제3호 안건인 법인 직원인사규정 제정(안)은 원안대로 제정할 것을 만장일치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하다.000

< 제4호 안건. 교원·직원 징계 처분에 관한 규정 개정(안) >

이사장직무대행자 : 제4호 안건인 교원·직원 징계처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상정하고 안건에 대하여 총무팀장에게 설명요청하다.

(총무팀장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중심으로 조항별로 설명하다.)

<p><간서명></p>	<p>황철순</p>	<p>강재상</p>	<p>황인하</p>
--------------------	------------	------------	------------

(이사들은 신·구조문대비표를 검토하고 의견을 교환하다.)

황철순 이사 : 검토결과 교원·직원 징계처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하다.

이혜선 이사 : 제안에 동의하다.

장병집 이사 : 동의에 재청하다.

이 사 일 동 : 전원 찬성하다.

이사장직무대행자 : 제4호 안건인 교원·직원 징계처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별첨]의 신·구조문 대비표와 같이 개정 할 것을 만장일치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000

< 제5호 안건. 교원·직원 징계위원회 위원 선임(안) >

이사장직무대행자 : 제5호 안건인 교원·직원 징계위원회 위원 선임(안)을 상정하고 안건에 대하여 총무팀장에게 설명요청하다.

총 무 팀 장 : 현재 징계위원의 임기만료를 설명하고, 교원징계위원은 대학에서 2019.01.01.부터 2019.12.31까지 1년의 임기로 사회복지과 교수 김정기, 세무회계과 교수 장명복을 신규로 추천하였고 예비위원으로 보건의료행정과 부교수 오양환, 건축과 교수 조현준, 컴퓨터정보통신과 교수 진용선, 모델과 부교수 한설희를 연임하는 것으로 추천하였으며, 직원징계위원은 2019.01.01.부터 2019.12.31까지 1년의 임기로 사무처 일반직4급 안명준, 기획처 일반직5급 안병준, 정보지원센터 일반직6급 정정환을 연임하는 것으로 법원에서 추천하였으며, 교원 및 직원징계위원회 모두 법인 이사 중 위원 2인을 선임하여야 함을 설명하다.

(이사들은 의견을 교환하다.)

장병집 이사 : 박성배 이사와 황인하 이사를 교원 및 직원 징계위원회위원으로 추천하다.

(이사들간 의견을 교환하고 박성배 이사와 황인하 이사가 수락하다.)

강재상 이사 : 원안대로 선임 할 것을 제안하다.

황철순 이사 : 제안에 동의하다.

이혜선 이사 : 동의에 재청하다.

이 사 일 동 : 전원 찬성하다.

이사장직무대행자 : 제5호 안건인 교원·직원 징계위원회 위원 선임(안)은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으로 2019.01.01.부터 2019.12.31까지 1년의 임기로 박성배 이사와 황인하 이사, 사회복지과 교수 김정기, 세무회계과 교수 장명복을, 예비위원으로 보건의료행정과 부교수 오양환, 건축과 부교수 조현준, 컴퓨터정보통신과 교수 진용선, 모델과 부교수 한설희를 선임할 것과 직원징계위원회 위원으로 2019.01.01.부터 2019.12.31까지 1년의 임기로 박성배 이사와 황인하 이사, 사무처 일반직4급 안명준, 기획처 일반직5급 안병준, 정보지원센터 일반직6급 정정환을 선임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간서명>	황철순	강재상	장병집
-------	-----	-----	-----

선포하다.000

< 제6호 안건. 2018회계연도 교비(등록금·비등록금)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

이사장직무대행자 : 제6호 안건인 2018회계연도 국제대학교 교비(등록금·비등록금)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고 안건에 대하여 기획처장에게 설명요청하다.
(기획처장이 제6호 안건의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하다.)

이사장직무대행자 : 이사들에게 의견제출 요청하다.
(각 이사들은 회의자료인 예산서를 검토하고, 의견을 교환하다.)

이사장직무대행자 : 감사에게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다.

임재현 감사 :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의견을 제출하다.
(이사들은 의견을 교환하다.)

강재상 이사 :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제안하다.

황인하 이사 : 제안에 동의하다.

장병집 이사 : 동의에 재청하다.

이 사 일 동 : 전원 찬성하다.

이사장직무대행자 : 제6호 안건 2018회계연도 국제대학교 교비(등록금·비등록금)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별첨]의 2018회계연도 국제대학교 교비(등록금·비등록금)회계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총괄표와 같이 등록금회계 자금예산 수입·지출 총액 25,490,002천원, 비등록금회계 자금예산 수입·지출 총액 18,102,331천원으로 편성·운영 할 것을 만장일치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000

< 제7호 안건. 교원 재임용(안) >

이사장직무대행자 : 제7호 안건인 교원 재임용(안)을 상정하고 교무처장에게 안건에 대하여 설명요청하다.

교 무 처 장 : 재임용 심사결과에 따라 2019.2.28. 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전임교원 24명 중 호자동차기계과 부교수 김동춘 외 8명을 2019.3.1. ~ 2024.2.29.까지 5년 재임용하고, 세무회계과 부교수 기중서 외 1명을 2019.3.1. ~ 2022.8.31. 3년 6개월 재임용하며, 아동보육과 조교수 김규욱 외 4명을 2019.3.1. ~ 2022.2.28. 3년 재임용하고, 컴퓨터정통신과 조교수 김철진 외 4명을 2019.3.1. ~ 2020.2.29. 1년 재임용하는 것과 전기과 부교수 윤현상을 2019.3.1. ~ 2024.2.29. 5년, 유아교육과 조교수 나영이 외 1명을 2019.3.1. ~ 2022.2.28. 3년, 군사학과 조교수 김창수를 2019.3.1. ~ 2020.2.29. 1년 조건부 재임용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조건부 재임용의 경우 2019.2.28.까지 연구실적물을 추가로 제출하는 조건임을 설명하다.

<간서명>	황인하	김재상	장병집
-------	-----	-----	-----

□ 전임교원 재임용 대상자 명단

순번	소속	직급	성명	생년월일	재임용기간	비고
1	자동차기계과	부교수	김동춘	65. 3.21.	2019. 3. 1. ~ 2024. 2. 29. (5년)	
2	산업디자인과	부교수	김상호	63. 8. 2.		
3	건축과	부교수	김영민	62. 6. 6.		
4	뷰티디자인과	부교수	김영주	64.11.16.		
5	패션디자인과	부교수	김은경	60. 9.11.		
6	엔터테인먼트과	부교수	윤성혜	69. 1.23.		
7	산업디자인과	부교수	홍혜정	62. 9.23.		
8	자동차기계과	부교수	황석렬	60. 3.15.		
9	세무회계과	부교수	기중서	57. 6.17.	2019. 3. 1. ~ 2022. 8. 31. (3년 6개월)	
10	자동차기계과	부교수	이철승	57. 8.30.		
11	아동보육과	조교수	김규옥	59.10.15.	2019. 3. 1. ~ 2022. 2. 28. (3년)	
12	사회복지과	조교수	박진영	74. 1. 9.		
13	간호과	조교수	백경아	69. 3.13.		
14	모델과	조교수	이선	69.11.19.		
15	세무회계과	조교수	최혁	75. 7.23		
16	컴퓨터정보통신과	조교수	김철진	54.12.19	2019. 3. 1. ~ 2020. 2. 29. (1년)	
17	안경광학과	조교수	강현구	84. 2. 8.		
18	간호과	조교수	고정미	69. 9. 7.		
19	군사학과	조교수	배상희	75. 1.22.		
20	간호과	조교수	이승희	73.12.25.		

□ 전임교원 조건부 재임용 대상자 명단

순번	소속	직급	성명	생년월일	재임용기간	비고
21	전기과	부교수	윤현상	61.12. 5.	2019. 3. 1. ~ 2024. 2. 29.(5년)	2019.2.28.까지 연구실적물 제출
22	유아교육과	조교수	나영이	71.11. 9.	2019. 3. 1. ~ 2022. 2. 28.(3년)	
23	유아교육과	조교수	장석경	70. 4. 3.		
24	군사학과	조교수	김창수	75. 6.25	2019. 3. 1. ~ 2020. 2. 29.(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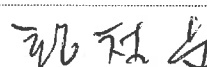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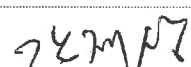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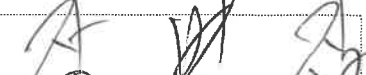
이사장직무대행자 : 이사들에게 의견 제출을 요청하다.

(이사들 자료를 보며 의견을 교환하다)

장병집 이사 :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제안하다.

황철순 이사 : 제안에 동의하다.

이혜선 이사 : 동의에 재청하다.

<간서명>			
-------	---	---	---

이 사 일 동 : 전원 찬성하다.

이사장직무대행자 : 제7호 안전 교원 재임용(안)은 재임용 심사결과에 따라 2019.2.28.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전임교원 24명 중 호자동차기계과 부교수 김동춘 외 8명을 2019.3.1. ~ 2024.2.29.까지 5년 재임용하고, 세무회계과 부교수 기중서 외 1명을 2019.3.1. ~ 2022.8.31. 3년 6개월 재임용하며, 아동보육과 조교수 김규옥 외 4명을 2019.3.1. ~ 2022.2.28. 3년 재임용하고, 컴퓨터정통신과 조교수 김철진 외 4명을 2019.3.1. ~ 2020.2.29. 1년 재임용하는 것과 전기과 부교수 윤현상을 2019.3.1. ~ 2024.2.29. 5년, 유아교육과 조교수 나영이 외 1명을 2019.3.1. ~ 2022.2.28. 3년, 군사학과 조교수 김창수를 2019.3.1. ~ 2020.2.29. 1년 조건부 재임용하는 것을 만장일치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하다.000

이사장직무대행자 : 다른 의견 여부를 묻다.

이 사 일 동 : 의견 없음.

(임원들간의 호선으로 의하여 간서명 자는 황철순 이사, 강제상 이사, 장병집 이사로 선정)

이사장직무대행자 : 폐회 선언하다. (18:15)

2018년 12월 18일

학교법인 국제대학교 이사회 이 사	박 성 배	<u>박성배</u>
	이 사 강 재 상	<u>강제상</u>
	이 사 이 혜 선	<u>이혜선</u>
	이 사 장 병 집	<u>장병집</u>
	이 사 황 인 하	<u>황인하</u>
	이 사 황 철 순	<u>황철순</u>
감 사 임 안 식		<u>임안식</u>
감 사 임 재 현		<u>임재현</u>

2018회계연도 법인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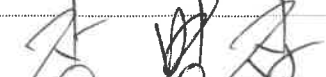
(단위 : 천원)

수입 현황					지출 현황				
관 별	2018 추가경정예산	2018 예산	증감액	구성비 (%)	관 별	2018 추가경정예산	2018 예산	증감액	구성비 (%)
전입및 기부수입	128,550	106,500	22,050	17.8%	보 수	0	0	0	0.0%
교육외수입	371,873	20,000	351,873	51.4%	관리운영비	54,100	47,100	7,000	7.5%
투자및기타 자산수입	202,776	0	202,776	28.0%	교육외비용	0	0	0	0.0%
고정자산 매각수입	0	0	0	0.0%	전 출 금	119,800	100,000	19,800	16.5%
고정부채 입금	0	0	0	0.0%	예 비 비	0	0	0	0.0%
					투자및기타 자산지출	549,899	0	549,899	76.0%
					고정 자산 매입지출	0	0	0	0.0%
					고정부채 상 환	0	0	0	0.0%
미사용 전기이월자금	20,600	20,600	0	2.8%	미사용차기 이월자금	0	0	0	0.0%
계	723,799	147,100	576,699	100%	계	723,799	147,100	576,699	100%

2018회계연도 법인 수익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표

(단위 : 천원)

수입 현황					지출 현황				
관 별	2018 추가경정예산	2018 예산	증감액	구성비 (%)	관 별	2018 추가경정예산	2018 예산	증감액	구성비 (%)
전입및 기부수입	0	0	0	0.0%	보 수	79,100	52,500	26,600	21.4%
교육외수입	162,200	163,200	-1,000	43.9%	관리운영비	80,700	80,000	700	21.8%
고정자산 매각수입	0	0	0	0.0%	교육외비용	0	0	0	0.0%
고정부채 입금	5,000	0	5,000	1.4%	전 출 금	122,050	100,000	22,050	33.0%
기본금	101,278	-	101,278	27.4%	유형고정자산 매입지출	0	0	0	0.0%
					고정부채 상환	20,000	0	20,000	5.4%
미사용 전기이월자금	101,172	69,300	31,872	27.4%	미사용 차기이월자금	67,800	0	67,800	18.3%
계	369,650	232,500	137,150	100%	계	369,650	232,500	137,150	100%

<간서명>			
-------	---	---	---

2019회계연도 법인 일반회계 예산(안) 총괄표

(단위 : 천원)

수입 현황					지출 현황				
관 별	2019 예산	2018 추가경정예산	증감액	구성비 (%)	관 별	2018 예산	2017 예산	증감액	구성비 (%)
전입및 기부수입	114,700	128,550	-13,850	84.5%	관리운영비	55,700	54,100	1,600	41.0%
교육외수입	21,000	371,873	-350,873	15.5%	전 출 금	80,000	119,800	-39,800	59.0%
투자및기타 자산수입	0	202,776	-202,776	0.0%	투자및기타 자산지출	0	549,899	-549,899	0.0%
고정자산 매각수입	0	0	0	0.0%					
고정부채 입금	0	0	0	0.0%					
미사용 전기이월자금	0	20,600	-20,600	0.0%	미사용차기 이월자금	0	0	0	0.0%
계	135,700	723,799	-588,099	100%	계	135,700	723,799	-588,099	100%

2019회계연도 법인 수익회계 예산(안) 총괄표

(단위 : 천원)

수입 현황					지출 현황				
관 별	2018 예산	2017 예산	증감액	구성비 (%)	관 별	2018 예산	2017 예산	증감액	구성비 (%)
교육외수입	162,300	162,200	100	70.5%	보 수	53,100	79,100	△26,000	23.1%
고정자산 매각수입	0	5,000	-5,000	0.0%	관리운영비	70,300	80,700	△10,400	30.5%
고정부채 입금	0	101,278	-101,278	0.0%	전 출 금	106,700	122,050	△15,350	46.4%
					고정부채 상환	0	20,000	△20,000	0.0%
미사용 전기이월자금	67,800	101,172	-33,372	29.5%	미사용 차기이월자금	0	67,800	△67,800	0.0%
계	230,100	369,650	-139,550	100%	계	230,100	369,650	139,550	100%

<간서명>	황 전순	김재영	장병호
-------	------	-----	-----

법인직원인사규정

제정 2018. 12. 1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국체대학교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사무국 에 소속 직원에게 적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법인사무국에 재직하는 직원에게 적용한다.

제1장 신규채용

제3조(원칙)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계약조건을 정하여 신규 채용자를 임용한다.

1. 근무기간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2. 근무장소 : 임용예정부서
3. 업무내용 : 담당예정업무
4. 근무시간 : 일일 근무시간(휴게시간 포함)
5. 근무조건 : 주5일 근무, 휴가 등
6. 보 수 : 이사장이 따로 정함
7.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계약직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임용한다.

1. 신입 : 결원보충, 총원 등
2. 경력 : 임용예정 직무와 관련 있는 경력자 총원 등
3. 정년초과 : 공로인정, 경력자 총원 등

제4조(절차) 계약직 직원의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임용기준) 신규채용시 정관 제65조 제2항에 따라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되, 예외를 두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 자격증 및 경력을 필요로 하는 전문 직종
2. 기타 이사장이 정하는 직종

제6조(결격사유) 신규채용시 결격사유는 정관 제65조 제1항에 따른다.

제7조(제출서류) 신규임용자는 발령을 위하여 별표1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 보수

제8조(보수) 법인사무국 소속 직원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력 등을 고려하여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복무

제9조(복무) 법인사무국 소속 직원의 복무는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

<간서명>	황진호	김기성	장병삼
-------	-----	-----	-----

제4장 신분보장

제10조(원칙)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예산의 감축 또는 이 규정에 정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감봉, 휴직 또는 면직되지 아니한다. 다만, 직제의 개폐와 정원의 조정에 의하여 폐직되었을 경우와 조건부로 임명된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11조(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면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의 휴양을 요할 때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자녀 1명당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직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5. 만19세 미만의 아동(제4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를 입양하는 경우
6.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2조(휴직기간) 제11조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1호 : 1년 이내(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2. 제2호 : 복무기간 및 의무수행기간, 단, 정년의 남은 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3. 제3호 : 3월
4. 제4호 : 자녀 1명에 대하여 1년 이내로 하되 분할가능
5. 제5호 :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제13조(휴직직원의 신분) ① 휴직중인 직원은 직원으로서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한다.

- ② 휴직중인 자도 정관과 법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③ 휴직자는 허가 없이 타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14조(휴직직원의 처우) 제11조에 의하여 휴직된 직원의 처우에 대하여는 국제대학교 교직원보수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직위해제) ① 임면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2.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되면 임면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임면권자는 제1항 제2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자에게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

④ 임면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3항에 따라 대기 명령을 받은 자에게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하면 제3호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16조(당연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때는 그 날을 퇴직한 날로 본다.

1. 이 규정 제6조 해당되는 자
2. 본인이 퇴직원을 제출하고 법인이 승인하였을 때
3. 사망하였을 때
4. 근로계약이 만료하여 계약갱신이 되지 아니하였을 때
5. 정년연령에 도달하였을 때
6. 휴직기간이 만료하고도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거나 복직원을 제출 하지 아니하였을 때

제17조(면직)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임면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간서명>	홍성현	김민서	김명준
-------	-----	-----	-----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는 자
2. 제15조 제1항에 의거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
3. 정부, 학교법인의 각 기관을 파괴할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자
4. 직제의 개폐와 정원의 조정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5.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의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자
6. 인사기록에 부정한 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자
7. 본 규정에 의한 정년이나 퇴직명령에 불응한 자

② 제1항 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시킬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직권면직일은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로 한다.

제18조(정년)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하되 정년에 이른 날이 연도 중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을 정년으로 적용한다. 다만, 법인 경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 대하여는 촉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9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간서명>	김원준	김재영	장병삼
-------	-----	-----	-----

교원징계처분에관한규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신설>	제22조(징계 등 처분 기록의 말소) 징계 등 처분 기록의 말소는 「교육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을 준용한다.	상위법 적용
제22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 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 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이 정한다.	제23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 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 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이 정한다.	조 변경

직원징계처분에관한규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신설>	제22조(징계 등 처분 기록의 말소) 징계 등 처분 기록의 말소는 「교육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을 준용한다.	상위법 적용
제22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 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 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이 정한다.	제23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 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 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이 정한다.	조 변경

<간서명>	황정현	김민서	김명준
-------	-----	-----	-----

2018회계연도 교비회계 1차 추가경정 예산 수입 총괄표




(단위 : 천원)

관별	2018	2018	내부거래 제거	2018	2018	증감액	구성비
	등록금회계 1차추경예산	비등록금회계 1차추경예산		교비회계 1차추경예산	교비회계 본예산		
	(A)	(B)	(C)	(D=A+B-C)	(E)	(D-E)	
등록금수입	24,025,806	730,110	0	24,755,916	25,418,745	-662,829	58.2%
전입및기부수입	0	10,953,365	1,060,003	9,893,362	9,599,825	293,537	23.3%
교육부대수입	0	1,889,080	0	1,889,080	1,851,080	38,000	4.4%
교육외수입	179,000	322,994	0	501,994	131,100	370,894	1.2%
운영수입계	24,204,806	13,895,548	1,060,003	37,040,351	37,000,750	39,601	87.1%
투자및기타자산수입	0	0	0	0	0	0	0.0%
고정자산매각수입	0	1,540,100	0	1,540,100	1,500,000	40,100	3.6%
유동부채입금	0	0	0	0	0	0	0.0%
고정부채입금	0	0	0	0	0	0	0.0%
자본및부채수입계	0	1,540,100	0	1,540,100	1,500,000	40,100	3.6%
미사용전기이월자금	1,285,196	2,666,683	0	3,951,879	2,813,000	1,138,879	9.3%
자금수입총계	25,490,002	18,102,331	1,060,003	42,532,330	41,313,750	1,218,580	100.0%

2018회계연도 교비회계 1차 추가경정 예산 지출 총괄표

(단위 : 천원)

관별	2018	2018	내부거래 제거	2018	2018	증감액	구성비
	등록금회계 1차추경예산	비등록금회계 1차추경예산		교비회계 1차추경예산	교비회계 본예산		
	(A)	(B)	(C)	(D=A+B-C)	(E)	(D-E)	
보수	15,321,378	587,370	0	15,908,748	15,634,810	273,938	37.4%
관리운영비	3,941,362	1,729,215	0	5,670,577	6,189,120	-518,543	13.3%
연구학생경비	4,809,308	10,653,463	0	15,462,771	15,162,880	299,891	36.4%
교육외비용	0	421,805	0	421,805	180,000	241,805	1.0%
전출금	1,060,003	0	1,060,003	0	0	0	0.0%
예비비	357,951	100,390	0	458,341	208,040	250,301	1.1%
운영지출계	25,490,002	13,492,243	1,060,003	37,922,242	37,374,850	547,392	89.2%
투자및기타자산지출	0	24	0	24	0	24	0.0%
고정자산매입지출	0	1,888,900	0	1,888,900	1,178,900	710,000	4.4%
유동부채상환	0	921,164	0	921,164	0	921,164	2.2%
고정부채상환	0	1,800,000	0	1,800,000	2,760,000	-960,000	4.2%
자본및부채지출계	0	4,610,088	0	4,610,088	3,938,900	671,188	10.8%
미사용차기이월자금	0	0	0	0	0	0	0.0%
자금지출총계	25,490,002	18,102,331	1,060,003	42,532,330	41,313,750	1,218,580	100.0%

<간서명>			
-------	---	---	---